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68302 판결 [매매대금 잔금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8. 6. 22.

판결 선고 2018. 8. 24.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513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6. D과 사이에, 그녀 소유의 인천 옹진군 O 등 총 32필지 면적 합계 32,39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8억 원은 2008. 3.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2호증, 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옹진군 E 지상에 약 250평 규모의 무허가 철골구조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하고 있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포함한 지상권 일체(이하 '이 사건 지상권')를 1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인 2007. 12. 26.에, 1, 2차 중도금 각 3억 원은 2008. 4. 5.과 12. 31.에, 잔금 6억 원은 2010.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 매매계약(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혼자서 위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F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8. 4. 4. D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을2호증)의 매수인란에 "F"을 추가하고 계약일자를 "2008. 4. 4.", 잔금 지급일자를 "2008. 4. 30."로 각각 고쳐 쓰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이어서 피고와 F은 2008.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각각 자신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양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D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18억 원의 지급을 모두 마쳤다(을1, 5호증,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그런데 F은 위 계양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0. 11. 23. 계양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1. 12.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1/2 지분을 경락받음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4. 23.경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을10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2012. 5. 7.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6. 계약한 이 사건 지상권(의 매매대금) 13억 원 중에서 피고의 지분 50%의 잔금으로 인천 옹진군 G 토지와 건물 및 H 도로(이하 통틀어 '대물 부동산')를 3억 7,5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한다. 단, 계양새마을금고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며 계산상의 모든 차액은 없는 것(0원)으로 정리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먼저, 사문서인이 사건 협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협약서 전체의 진정성립 역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협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협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갑10,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I의 증언은, 이 사건에서 원고 역시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무렵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상권 매매대금의 잔금 액수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이 사건 협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2. 4. 23.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실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의 합의 내용대로 피고로부터 대물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 그 기재 내용 및 원고와 위 I 내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협약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약서를 위조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이 사건 협약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서는 2012. 4. 23.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협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위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원고와 피고는 2012.4. 20. 그때까지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10억 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을 3억 원으로 정산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 서 정한 잔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와 F이라고 보는 경우라도, 피고와 F은 동업관계에 있고 F이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이상, 피고는 민법 제713조에 따라 무자력 조합원인 F이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도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잔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피고는 혼자서 이 사건 토지와 지상권을 매수하기 어렵게 되자 F과 함께 각그 1/2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물론,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역시 피고와 F이 1/2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이 며, D과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F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동의 한 바 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의 매매대금 중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으로써 2012. 4. 23.경원고와 사이에 더 이상의 잔금이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정산을 마친 바 있다. 결국피고에게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억 원의 지급의 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와 F은 동업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동업관계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미 그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타조합원의 변제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13조를 내세워 이 사건 지상권의 매매대금 중 F 부담부분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매수인 확정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4.경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피고 외에 F을

추가하기로 하는 변경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피고와 F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만이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2007. 12.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4. 4.경 D와 사이에 피고 외에 F을 매수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와 F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2씩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이 사건 지상권을 확보하는 것도 이 사건 토지에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공동매수인으로 변경할 즈음, 원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에서 '피고와 F'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2) 이와 관련하여 제1심 증인 F 역시,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며칠 후에 피고와 증인이 이 사건 지상권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 …… 새마을금고 대출과정에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까지 함께 수정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바로 처리를 못하였고, 원고가 차후에 서류를 보완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원고 역시 위 대출과정에 참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이미 F의 존재와 함께, F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원고의 입장에서 굳이 F을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특별히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F은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F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나 피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가 지정한 M의 농협중앙회 계좌 또는 N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2008. 4. 7. 2억 원, 4. 22. 4,700만 원, 4. 24. 5,000만 원, 2009. 1. 2. 5,000만 원, 합계 3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3호증, 을8, 19, 20호증). 비록 F은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받는 통장에는 피고의 이름 "B"나 "지상권중도금"이라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서(을10호증) 작성 당시 그때까지 F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상권의 매매대금이 위 3억 4,7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와 정산을 마침으로써, F로부터 송금된 돈임을 확인한 바 있다.

4) 특히 원고와 피고가 2012. 4. 23.경 작성한 이 사건 협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지상권 매매대금 13억 원 중에서 피고의 지분 50%의 잔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다가, 원고 역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3억 5,300만 원, F로부터 지급받은 3억 4,700만 원의 합계 7억 원임을 전제로 피고 몫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고 소유의 대물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정산을 마치는 등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F을 이 사건 지상권의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5) 실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시로 F의 사무실을 찾아가 F에게 이 사건 지상권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F로부터 각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가기도 하였다(제1심 증인 F의 증언).

나. 민법 제713조의 적용 여부 등

1) 위 인정과 같이 피고와 F을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보는 이상, 피고와 F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 매매대금 13억 원 중 각자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6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지상권의 매매대금 중 다른 공동매수인인 F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까지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와 F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F이 이 사건 지상권 매매대금의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이상, 피고는 민법 제713조에 따라 F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위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23호증, 을3,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과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적어도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매수인을 피고와 F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08. 4.경 당시에는 피고와 F 사이에 조합관계를 형성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여

이들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민법제713조가 적용된다거나 원고가 피고와 F이 조합원인 조합에 이 사건 지상권을 매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매수인 변경합의를 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2008. 4.경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 대한 변경합의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와 F 사이에 구체적인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즉, F은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지상권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였던 피고의 제안에 따라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권 매매대금의 1/2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권에 대한 각 1/2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개발비용의 부담이나 사업 완성 후의 손익분배 등 공동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제1심 증인 F의 증언 참조), 위 매매대금 외에 실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한 흔적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나) 실제 F이 'P'이라는 상호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사업장으로 하여 토지임대업에 관하여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기는 위 변경합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08. 9. 24.이어서(을3호증), 위 사업자등록 사실을 두고 그보다 앞선 2008. 4.경 이미 피고와 F이 장차 어떤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정도의 합의 외에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그 후 위 'P'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고급전원주택 "Q"를 지어 분양광고(을17호증)를 한 것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R의 지분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한참 지난 2017. 3.경의 일일 뿐이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피고 1인이지만 F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다만 가정적으로 F을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피고와 F이 동업관계이므로 민법 제713조에 의하여 피고가 F의 몫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을 하여 왔을 뿐이고, 실제 피고와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을 정산하는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단 한 번도 피고와 F의 동업관계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이, 피고와 F이 이 사건 지상권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상권 매매대금 중 피고의 지분 50%에 대한 잔금을 계산상 없는 것으로 정리한 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F이 이 사건 지상권을 매수한 것은 상인이 그 영업행위 내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지상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의 변경합의가 상인의 상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다.]

다. 지상권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과 최종 정산의 완료

1) 갑3호증, 을18, 20,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8.부터 2009. 10.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지상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3억 5,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피고가 2012. 4.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상권 매매대금 중 피고의 지분 50%에 대한 잔금으로 대물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계산상의 모든 차액은 없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대물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피고가 그 부담부분에 대한 이행 및 정산을 마침으로써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설령 피고가 F 몫의 이 사건 지상권 매매대금에 대해서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라도,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의 작성과 그 이행으로써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내용의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지상권 매매대금 중 F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이 사건 협약서에 '매매대금 중 피고의 지분 50%에 대한 잔금으로 대물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계산상의 모든 차액은 없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와 F 사이에 내부적인 지분비율이 50%라는 사실을 알고서 지상권 매매대금 잔금의 이행으로써

피고 소유의 대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0. 12. 30.이경과하도록 피고나 F로부터 이 사건 지상물의 매매대금 중 잔금 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2. 4. 23.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의 책임 부분을 최종 정산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시가 3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물 부동산을 이전받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D은 2002. 10. 23. 그 전소유자인 K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웅진군 J 임야 32,395㎡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인천지방법원 2003. 10.9. 선고 2002가단6561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나9957 판결, 대법원 2004. 8. 16.자 2004다27259 판결),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K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고 위 소송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으로 소유권자인 D이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 자체의 법적인 효력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상권 매매대금 잔액의 지급을 독촉하여 그로부터 수차례 각서를 제출받으면서도 2017. 1. 4.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2017. 2.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수도 없이 피고를 찾아가 구두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3, 15 내지 17, 21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2012. 8. 8.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영주시 S 토지에 관하여, 2015. 2. 13.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인천 웅진군 G 주택에 관하여 각 경매개시결정(갑9호증)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절박한 형편에 있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피고는 공동매수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지상권매매계약에 따른 자신 몫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 따른 전체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충분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담부분을 넘는 F 몫의 나머지 매매대금 3억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판사 손병원, 판사 방웅환